

뉴욕 시민 여러분,

뉴욕주 전체에 걸쳐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은 커뮤니티로 복귀하여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감 시설에서 출감한 후의 적절한 재활은 고용, 교육, 주택 공급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다행히 뉴욕 주법은 범죄 기록이 있는 뉴욕주 시민이 수감원이 되는 일자리를 찾고, 교육받으며, 주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법규에 관해 설명하며 고용주, 지방자치제 단체, 면허 기관 또는 신원 조사 회사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뉴욕주는 더욱 나은 미래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제 사무소로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etitia James



Attorney General
of New York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소)
Letitia James

자원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Civil Rights Bureau** (뉴욕주 법무장관 시민권
관리사무소)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212) 416-8250
(800) 788-9898 (TDD)

ag.ny.gov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뉴욕주 인권 분과)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Y 10458

888-392-3644

dhr.ny.gov

**Certificate Review Unit, New York State
Division
of Parole** (뉴욕주 가석방 인증 검토 부서)

97 Central Avenue
Albany, New York 12206

518-485-8953

doccs.ny.gov/board-parole

복귀 장벽

재활 후의 권리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소)

Letitia James



주 법규: 보호 내용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및 New York Correction Law는 고용주, 지방자치체 단체, 면허 기관 또는 신원 조사 회사가 범죄 기록을 기반으로 지원자나 고용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NYS Human Rights Law 296(16)에 따라 고용주 및 면허 기관은 다음에 관해 물어볼 수 없으며 다음을 기반으로 지원자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범죄자 판결
- 비공개 기록
- 사면받은 범죄 기록
- 유죄 선고로 이어지지 않은 구속
- 기각을 고려하기 위한 휴정

NYS Correction Law 23-A에 의하면, 고용주는 각 지원자의 범죄 기록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기록이 해당 직책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개인의 범죄 기록이 직책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이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타인이나 재산에 수락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고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후보자의 범죄 기록을 기반으로 거절하기 전에 범죄 성격, 범죄 이후 지난 시간,

범죄 당시 지원자의 연령, 각 지원자의 범죄 기록 분석 시의 재활 증거 등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주 법규는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이 특정 면허나 직업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고용주는 상기 규제로부터 면제됩니다.

금지된 행동

다음은 이러한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동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원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실격시키거나, 고용인의 범죄 기록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해고하거나 승진을 거부하는 행위.

유죄 선고로 이어지지 않은 구속에 대해 지원자에게 묻는 것.

지원자에게 청소년 범죄자 판결, 사면되거나 비공개 기록에 관해 묻는 것.

지원자의 배경을 평가할 때 범죄 행위 당시의 연령, 재활 증거 등의 관련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Certificates of Rehabilitation의 장벽 제거하기

Certificates of Rehabilitation(COR)은 신청자의 고용 기회를 위해 재활 증거를 제공하며 일부 면허에 적용되는 자동 금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재활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Certificates of Relief from Disabilities(CRD)는 횡수에 상관없이 경범죄 판결을 받았지만 중죄 판결이 한 개까지만 있는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판결에 대해 개별적인 CRD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CRD는 개인이 보호 관찰 기간에 있거나 가석방 시 주어지며 형벌을 모두 치르고 나면 철회되지 않는 한 영구 상태가 됩니다. 형벌 선고 재판정 및 Department of Corrections와 Community Supervision은 CRD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Certificates of Good Conduct(CGC)는 경범죄 판결 횡수와는 상관없이 중죄 판결을 두 번 이상 받은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CGC의 가용성은 범죄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개의 CGC는 개인의 범죄 기록 전체에 적용됩니다. Department of Corrections 및 Community Supervision은 CGC를 수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원 조사 기록 확보

또한, 고용주가 귀하를 상대로 수행한 신원 조사서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N.Y. Gen. Business Law § 380, the New York Stat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의 보호를 받습니다. FCRA는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귀하는 고용주가 귀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신원 조사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고용주가 받은 신원 조사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원 조사서에서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거나 고용주가 볼 권리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유죄 판결로 인해 귀하의 고용 기회가 실격되는지를 판단할 최종적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신원 조사 회사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원 조사서에 적색 깃발이 표시된 경우, 또는 고용될 수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Attorney General's Office 또는 Division of Human Rights에 연락하십시오.